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신김포농협 1개소		
사업목적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자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 문제 완화 및 해소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① 김포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농업인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80,000	70,000	120,000	-50,000	-10,000	
국비	40,000	35,000	60,000	-25,000	-5,000	
도비		0			0	
시비	40,000	35,000	60,000	-25,000	-5,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담인력 인건비 : 28,000,000*1명	= -28,000	
		·사무실 운영비 : 1,000,000원*1개소	= -1,000	
		·차량 임차료 : 235,000원*10개월*1대	= -2,350	
		·현장실습 교육비: 20,000원*100명	= -2,000	
		·농작업 참여자 교통비: 10,000원*500명	= -5,000	
		·농작업 참여자 숙박비: 20,000원*50명	= -1,000	
		·작업반장 수당: 10,000원*2명*170일	= -3,400	
		·영농작업용 비품 및 도구 구입, 농작업 참여자 상해보험료 등	= -7,250	

□ 예산요구 사유

-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지원하여 농업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중개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도 최종 사업대상자 신김포농협 1개소 선정, 확정내시 반영하여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0. ~ 2024. 12. : '25년도 사업대상자 공모 및 선정
 - 2025. 1. ~ 2025. 2. : '24년도 사업 정산
 - 2025. 3. ~ 2025. 12. : '25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개소 및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2023	○ 2023. 6. : 김포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개시(고촌농협) ○ 2023. 12월 말 기준 33개 농가 대상 근로인력 399명 중개 완료
2024	○ 2024. 4. : 김포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개시(고촌농협) ○ 2024. 12월 말 기준 388개 농가 대상 근로인력 779명 중개 완료
2025	○ 2025. 4. : 김포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개시 예정(신김포농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0,000	70,000	-	-	
2024	80,000	80,000	-	-	
2025	120,000	-	-	120,000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행정8급 이유민	전화	4255
-----	-------	------------	-----	----------	----	------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농어업인 8,853명		
사업목적	농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유지·증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7,287,300	7,317,300	-30,000	7,287,300	
국비	0	0			0	
도비	0	3,643,650	3,658,650	-15,000	3,643,650	
시비	0	3,643,650	3,658,650	-15,000	3,643,650	
기타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농어민 기회소득(일반농어민) : 경정(600,000원*7,363명)-기정(600,000원*7,413명)	= -30,000	
		· 농어민 기회소득(청년·귀농·환경농어민) : 경정(1,800,000원*1,490명)-기정(1,800,000원*1,490명)	= 0	

□ 예산요구 사유

- 농촌 고령화, 지역 소멸위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특정 농어민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재생 및 발전 기여
- 김포시 농어업인 8,853명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로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3. :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 및 사업 홍보
 - 2025. 4. ~ 5. : 농어민 기회소득 1차 신청·접수
 - 2025. 4. : 김포시 농어민기회소득위원회 구성
 - 2025. 5. : 읍면동위원회 및 시위원회 개최(1차)
 - 2025. 6.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1차)
 - 2025. 9. ~ 10. : 농어민 기회소득 2차 신청·접수
 - 2025. 11. : 읍면동위원회 및 시위원회 개최(2차)
 - 2025. 12.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2차)
 - 2025. 12. : 사업정산 및 실적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해당없음(신규사업)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농업8급 송혜린	전화	4254
-----	-------	------------	-----	----------	----	------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월곶면, 하성면
사업규모	1,720톤		
사업목적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지법	제21조 제2항
		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218,715	452,123	429,972	22,151	233,408	
국비	133,221	277,913	261,768	16,145	144,692	
도비	42,747	87,105	84,102	3,003	44,358	
시비	42,747	87,105	84,102	3,003	44,35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151	
토양개량제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토양개량제 : 경정(262천원*1,720톤)-기정(224천원*1,920톤) ※ 토양개량제 단가 : 규산 175천원/톤 석회고토 195천원/톤 패화석 142천원/톤 규산 공동살포비 국비 500원/kg, 도비 250원/kg, 시비 450원/kg	= 22,151	

□ 예산요구 사유

-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패화석) 공급으로 지력 유지
- 논 토양의 유효규산 함량 및 밭 토양의 산도를 높임으로써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2. : 2025년 토양개량제 추가신청 및 선정
 - 2025. 1 ~ 2025. 2. : 토양개량제 공급 및 공동살포(규산)실시
 - 2025. 3. ~ 4.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2025. 5. ~ 10. : 토양개량제 살포 현황 점검
 - 2025. 11. :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급량 : 608톤(고촌, 양촌, 동지역) - 지급금액 : 122,245천원
2024	- 공급량 : 907톤(대곶, 양촌) - 지급금액: 200,947천원
2025	- 공급량 : 1,720톤(월곶, 하성) - 공급 후 집행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6,987	122,245	-	14,742	
2024	218,715	200,947	-	17,768	
2025	429,972	-	-	429,972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행정9급 김산하	전화	4285
-----	-------	------------	-----	----------	----	------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농지
사업규모	124대		
사업목적	고령 및 중·소농업인, 여성농업인 등의 영농편의 증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제4조(자금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 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208,100	186,000	90,000	96,000	-22,100	
국비	0	0	0	0	0	
도비	62,430	55,800	27,000	28,800	-6,630	
시비	145,670	130,200	63,000	67,200	-15,470	
기타	208,100	186,000	90,000	96,000	-22,1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6,000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 경정(186,000천원)-기정(90,000천원) · 총 사업량 : 124대 · 품목별 지급단가 - 승용관리기·소형트랙터·동력운반차·고소작업차 : 5,000,000원/대 - 보행관리기 : 1,500,000원/대 - 전동전지가위 : 1,000,000원/대 - 전동분무기 : 150,000원/대 - 농산물작업대 : 300,000원/대	96,000	

□ 예산요구 사유

- 사회적 약자와 농업을 시작하는 소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등 소형농기계를 지원함으로써 영농 편의 도모, 농촌일손 부족 해소 등 농업경쟁력 강화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가내시에 따른 예산액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2. : 신청 및 접수
 - 2025. 03. : 사업대상자 선정
 - 2025. 04. ~ 08. : 보조금 집행 등 사업추진
 - 2025. 09. ~ 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동력운반차 : 2대 · 소형트랙터 : 3대 · 보행관리기 : 111대 · 전동전지가위 : 7대 · 전동분무기 : 22대
2024	· 고소작업차 : 1대 · 동력운반차 : 6대 · 보행관리기 : 121대 · 전동분무기 : 52대 · 전동전지가위 : 29대
2025	-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15,050	199,685	-	15,365	15,365
2024	208,100	205,595	-	2,505	2,505
2025	90,000	-	-	90,000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행정7급 조민경	전화	4279
-----	-------	------------	-----	----------	----	------

'24.11월 대설피해 농업분야 철거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농지
사업규모		4개소		
사업목적		대설 피해 농업인의 철거비 지원으로 조속한 영농 복귀 및 경영안정 도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제1항, 제3항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8,340	0	8,340	8,340	
국비	0	0	0	0	0	
도비	0	4,170		4,170	4,170	
시비	0	4,170		4,170	4,170	
기타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340	
'24.11월 대설피해 농업분야 철거비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 철거비 : 경정(4,170원*4,000㎡*50%)-기정(0원)	= 8,340	

□ 예산요구 사유

- '24.11월 대설 인하여 과수재배시설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복귀와 피해농업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철거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액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04. : 신청 및 접수
 - 2025. 04. ~ 12. : 현장확인 및 철거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6급 손동임	전화	4277
-----	-------	------------	-----	----------	----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양촌읍 금포로1697
사업규모	공공급식센터 1개소		
사업목적	공공급식센터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안정적인 공공급식 실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학교급식법	제3조 제1항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조
		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식생활교육, 전통 음식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75,645	67,720	33,860	33,860	-7,925	
국비	0	0	0	0	0	
도비	0	0	0	0	0	
시비	75,645	67,720	33,860	33,860	-7,925	
기타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3,860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공공급식센터 일반수용비 : 500,000원 = 500 ·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 5,400 : 경정(850,000원*12개월)-기정(400,000원*12개월) · 청소 대행수수료 = 6,800 : 경정(650,000원*12개월)-기정(1,000,000원*1년) · 구충 및 살균소독 대행수수료 = 2,000 : 경정(500,000원*5회)-기정(500,000원*1회)		
	201-02 공공운영비	· 공공급식센터 공과금(전기·수도) = 18,000 : 경정(3,500,000원*12개월)-기정(2,000,000원*12개월) · 시설 유자관리비(일반 수라수선) : 경정(2,820,000원)-기정(1,660,000원) = 1,160		

□ 예산요구 사유

- 공공급식센터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

□ 예산증감 사유

- 공공급식센터팀 신규 사무실 사용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센터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요구
- 공공급식센터팀 상시 근무에 따른 공과금 증액 요구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2. : 공공급식센터 시설유지 및 관리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 2회
2024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 1회 ○ 공공급식센터팀 사무실 이전 공사
2025	○ 공공급식센터 수도요금 1월분 납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280	4,908	-	2,372	
2024	75,645	69,312	-	6,333	
2025	33,860	9	-	33,851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공공급식센터팀장 양성지	담당자	해양수산8급 박원표	전화	4289
-----	-------	--------------	-----	------------	----	------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축산과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476농가		
사업목적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 지원 축산농가 경영안정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 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재해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82,500	370,623	370,623	0	288,123	
국비		0			0	
도비	16,500	111,187	111,187	0	94,687	
시비	66,000	259,436	259,436	0	193,436	
기타	55,000	247,082	247,082	0	192,082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보험료) : 경정(0원)-기정(370,623,000원) =	-370,623	
	301-14 기타보상금	·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보험료) : 1,297,700원*476농가*60% =	370,623	

□ 예산요구 사유

○ 민간경상사업보조 →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 변경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2.~2025.03. : 사업 안내 및 대상자 선정
 - 2025.04.~2025.11. : 사업 추진
 - 2025.11.~2025.12. : 실적보고, 정산검사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량 : 1,874,531두(수) - 집행액 : 64,629천원
2024	- 사업량 : 1,049,190두(수) - 집행액 : 82,314천원
2025	-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4,705	64,629	-	76	
2024	82,500	82,314	-	186	
2025	370,623	-	-	370,623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6급 박정미	전화	4302
-----	-----	----------	-----	----------	----	------

가축행복농장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5개소		
사업목적	가축행복농장 인증농가 지원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친환경 축산업 기반육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6조 도지사는 인증 받은 가축행복농장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① 가축의 행복 증진을 위한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419,500	370,476	370,475	1	-49,024	
국비		0			0	
도비	75,763	111,143	60,710	50,433	35,380	
시비	343,737	259,333	309,765	-50,432	-84,404	
기타	419,500	370,476	370,475	1	-49,024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	
가축행복 농장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도비 : 경정 (111,143,000원)-기정 (60,710,000원) · 시비 : 경정 (259,333,000원)-기정 (309,765,000원)	= 50,433 = -50,432	

□ 예산요구 사유

- 친환경 축산업을 위한 가축 행복농장 인증 확대 추진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지방비 재원비율 변경으로 도비 50,433천원 증액, 시비 50,432천원 감액 (1천원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2.~2025.03. : 사업 안내 및 대상자 선정
 - 2025.04.~2025.11. : 사업 추진
 - 2025.11.~2025.12. : 실적 보고, 정산검사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규모 : 6개소(이월1개소 포함)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등 - 집행액 : 487,476천원
2024	- 사업규모 : 4개소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등 - 집행액 : 306,325천원
2025	-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87,527	487,476	-	51	
2024	419,500	306,325	-	113,175	
2025	370,475	-	-	370,475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6급 박정미	전화	4302
-----	-----	----------	-----	----------	----	------

경기한우명품화 사업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한우농가
사업규모	4,398두(건)		
사업목적	한우 개량 촉진 및 사육기반을 구축하여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20,650	297,150	169,430	127,720	176,500	
국비		0			0	
도비	36,195	89,145	50,829	38,316	52,950	
시비	84,455	208,005	118,601	89,404	123,550	
기타	53,650	190,950	100,100	90,850	137,3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7,720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경기 한우명품화 사업 : 522,895원*418두(건)*58.43% * 세부 사업량 : 하단 '증감 사유' 참조	= 127,720	

□ 예산요구 사유

- 한우 개량 및 시설 지원 등으로 경기(김포) 한우 고급화 및 제품력 강화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량 증가로 인한 예산 증액 : 총 3,980두(건) → 4,398두(건)
- 개량사업 (한우등록 등) : 3,282두 → 3,610두
 - 경영개선사업 (면역증강제 등) : 677두 → 760두
 - 시설개선사업 (급수기 등) : 21건 → 28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2.~2025.03. : 사업 안내 및 대상자 선정
 - 2025.04.~2025.11. : 사업 추진
 - 2025.11.~2025.12. : 실적 보고, 정산검사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량 : 4,050두(수) - 집행액 : 176,522천원
2024	- 사업량 : 3,350두(수) - 집행액 : 120,650천원
2025	-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76,522	176,522	-	-	
2024	120,650	120,650	-	-	
2025	169,430	-	-	-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6급 박정미	전화	4302
-----	-----	----------	-----	----------	----	------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낙농·육우 사육농가
사업규모	6,931두/개소/kg/명		
사업목적	깨끗한 목장 환경 개선 및 젖소 개량과 산유능력 향상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 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07,250	230,700	162,800	67,900	123,450	
국비		0			0	
도비	21,450	69,210	48,840	20,370	47,760	
시비	85,800	161,490	113,960	47,530	75,690	
기타	90,850	205,700	137,800	67,900	114,85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7,900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시설개선사업 : 경정(146,900,000원)-기정(79,000,000원) =	67,900	

□ 예산요구 사유

- 사육 환경 개선,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환경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낙농육우산업의 축산 기반 구축

□ 예산증감 사유

- 시설개선 분야 사업량 변경 내시로 인한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2.~2025.03. : 사업 안내 및 대상자 선정
 - 2025.04.~2025.11. : 사업 추진
 - 2025.11.~2025.12. : 실적 보고, 정산검사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예산액 : 139,800천원 - 사업량 : 5,027두/개소/대 - 집행액 : 139,098천원
2024	- 예산액 : 107,250천원 - 사업량 : 5,648두/개소/대 - 집행액 : 107,250천원
2025	-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9,800	139,098	-	702	
2024	107,250	107,250	-	-	
2025	230,700	-	-	230,700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7급 황예린	전화	4303
-----	-----	----------	-----	----------	----	------

축산환경 개선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수분조절제 4,300톤,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8,000kg		
사업목적	축산농가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악취저감제 및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친환경축산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 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270,000	422,500	362,500	60,000	152,500	
국비		0			0	
도비	54,000	126,750	108,750	18,000	72,750	
시비	216,000	295,750	253,750	42,000	79,750	
기타	270,000	422,500	362,500	60,000	152,5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0	
축산환경 개선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수분조절제 : 150,000원*800톤*50% =	60,000	

□ 예산요구 사유

- 축산시설 분뇨 악취 제거를 위한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민원 해소에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수분조절제 사업량 증가 : 3,500톤 → 4,300톤 (800톤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2.~2025.03. : 사업 안내 및 대상자 선정
 - 2025.04.~2025.11. : 사업 추진
 - 2025.11.~2025.12. : 실적 보고, 정산검사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량 : 수분조절제 1,700톤, 악취저감미생물제(탈취제) 30,000kg - 집행액 : 208,766천원
2024	- 사업량 : 수분조절제 3,400톤, 악취저감미생물제(탈취제) 8,000kg - 집행액 : 270,000천원
2025	-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10,000	208,766	-	1,234	
2024	270,000	270,000	-	-	
2025	362,500	-	-	362,500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6급 박정미	전화	4302
-----	-----	----------	-----	----------	----	------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단체
사업규모	사일리지 2,630톤		
사업목적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한 가축사양으로 친환경 축산업 육성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81,000	150,022	150,021	1	69,022	
국비	27,000	50,007	50,007		23,007	
도비		20,003		20,003	20,003	
시비	54,000	80,012	100,014	-20,002	26,012	
기타	9,000	33,338	16,669	16,669	24,338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도비 : 경정 (20,003,000원)-기정 (0원) = 20,003 · 시비 : 경정 (80,012,000원)-기정 (100,014,000원) = -20,002		

□ 예산요구 사유

- 국내산 조사료 공급량 확대를 통한 수입 조사료 감소로 축산농가 경영개선

□ 예산증감 사유

- 지방비 재원비율 변경으로 도비 20,003천원 증액, 시비 20,002천원 감액 (1천원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2.~2025.03. : 사업 안내 및 대상자 선정
 - 2025.04.~2025.11. : 사업 추진
 - 2025.11.~2025.12. : 실적보고, 정산검사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량 : 1,091톤 - 집행액 : 62,550천원
2024	- 사업량 : 893톤 - 집행액 : 51,840천원
2025	-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6,726	62,550	-	94,176	
2024	81,000	51,840	-	29,160	
2025	150,021	-	-	150,021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6급 박정미	전화	4302
-----	-----	----------	-----	----------	----	------

FTA 피해보전직불금(축산분야)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87농가, 1,802마리		
사업목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 도모 및 피해 보전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들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93,835	0	93,835	93,835	
국비		93,835		93,835	93,835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3,835	
FTA 피해보전 직불금 (축산분야)	301-14 기타보상금	· 한우 : 53,119원*1,572마리 ≍ 83,503,000원 · 육우 : 17,242원*157마리 ≍ 2,707,000원 · 한우 송아지 : 104,450원*73마리 ≍ 7,625,000원	= 83,503 = 2,707 = 7,625	

□ 예산요구 사유

- FTA 체결로 인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가격 하락 피해를 일정수준 보전하여 축산농가 경영 안정 도모 및 피해 보전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국비 내시에 따라 예산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02. : 지급결정서 통보
 - 2025.02.~2025.03. : 사업 추진
 - 2025.04.~2025.05. : 지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신규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행정8급 고현종	전화	4304
-----	-----	----------	-----	----------	----	------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12개 질병 12,197,400마리		
사업목적	돼지열병, 소 설사병, 닭 뉴캐슬, 개 광견병 등 가축전염병 12종 예방백신 구입·접종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391,404	403,584	251,984	151,600	12,180	
국비	110,925	112,037	110,187	1,850	1,112	
도비	48,560	50,856		50,856	2,296	
시비	231,919	240,691	141,797	98,894	8,772	
기타	34,400	42,400	36,000	6,400	8,0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1,600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206-01 재료비	·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 경정(339,984,000원)-기정(197,984,000원) =	142,0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돼지 썬코백신 지원 : 경정(63,600,000원)-기정(54,000,000원) =	9,600	

□ 예산요구 사유

-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관리 강화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

□ 예산증감 사유

-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 도비 보조금 추가 반영
- 돼지 썬코백신 지원 사업 사업량 8,000두분 증가에 따른 예산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사업계획 수립
- 2025.01.~2024.02.

: 가축방역협의회(축종별 지원약품 협의 및 선정)
- 2025.03.~2023.12.

: 사업집행(예방접종사업 상반기 조기 집행, 돼지씨코백신 반기별 집행)
- 2025.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축산농가 협의 및 백신 17종 선정 - 소, 돼지, 가금, 개 예방백신 17종 24,298,097마리분 접종
2024	- 축산농가 협의 및 백신 18종 선정 - 소, 가금, 개 예방백신 18개 질병 21,957,240마리분 접종 완료
2025	-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74,148	351,315	-	22,833	
2024	391,404	380,765	-	10,639	
2025	251,984	-	-	251,984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의6급 신문주 농업7급 정현욱	전화	4312 4314
-----	-----	------------	-----	----------------------	----	--------------

소 보툴리즘 등 예방백신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소, 돼지, 가금 사육농가
사업규모	가축전염병 7종 377,850마리		
사업목적	소 보툴리즘·기생충 및 돼지 PRRS, 가금 저병원성AI 등 예방약품 공급으로 농가 경제적 손실 예방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32,500	109,200	32,500	76,700	76,700	
국비		0			0	
도비	9,750	32,760	9,750	23,010	23,010	
시비	22,750	76,440	22,750	53,690	53,690	
기타	32,500	65,000	32,500	32,500	32,5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6,700	
소 보툴리즘 등 예방백신 지원	206-01 재료비	· 가금 저병원성AI 백신, 감보로 백신 등 예방약품 지원 · 돼지 PRRS, 유행성 폐렴 백신 지원	= 74,000 = 2,700	

□ 예산요구 사유

- 축산농가에 피해를 주는 가축전염병 7종 예방 약품 공급으로 축산농가 질병 발생 사전 차단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예방백신 공급사업 5개 품목(가금 예방약 3종, 돼지 예방약 2종) 확대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기본계획 수립
 - 2025.01.~2024.02. : 가축방역협의회(축종별 지원약품 협의 및 선정)
 - 2025.01.~2025.06. :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보툴리즘 및 기생충 예방약 지원사업)
 - 2025.03.~2023.06. : 사업집행(재료비 백신 구입 및 지원)
 - 2025.08.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예방약품 56농가 1,878두분 공급
2024	- 예방약품 60농가 6,931두분 공급
2025	-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2,500	8,947	-	3,553	
2024	32,500	27,159	-	5,341	
2025	32,500	-	-	32,500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의6급 신문주	전화	4312
-----	-----	------------	-----	----------	----	------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우제류(소, 돼지, 염소, 사슴) 사육농가
사업규모	우제류 전 축종(소, 돼지, 염소, 사슴) 76,260두		
사업목적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물·화학적 처리, 매물지의 관리, 매물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80,296	102,438	78,077	24,361	22,142	
국비	56,260	54,706	54,706		-1,554	
도비	4,807	9,546		9,546	4,739	
시비	19,229	38,186	23,371	14,815	18,957	
기타	55,208	36,542	60,904	-24,362	-18,666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4,361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 경정(85,265,000원)-기정(60,904,000원) =	24,361	

□ 예산요구 사유

- 우제류(소, 돼지, 염소, 사슴) 축종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공급

□ 예산증감 사유

-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 도비 보조금 추가 및 사업 지원을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기본계획 수립
 - 2025.01.~2025.12. : 축산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
 - 4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상반기)
 - 10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하반기)
 - 2025.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구제역 백신 83,036두분 지원
2024	- 구제역 백신 80,325두분 지원
2025	- 진행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8,508	108,313	-	195	
2024	80,296	80,206	-	90	
2025	78,077	-	-	78,077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의6급 신문주	전화	4312
-----	-----	------------	-----	----------	----	------

AI 시료채취 비용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가금 사육농가
사업규모	전업 가금 사육농가 42개소		
사업목적	검사강화에 따른 시료채취 인력난 해소를 위해 민간 가축방역관 수의사 활용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5,800	0	5,800	5,800	
국비		2,900		2,900	2,900	
도비		0			0	
시비		2,900		2,900	2,9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800	
AI 시료채취 비용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시료채취비용 : 25,360원*4명*4시간*12회 ≒ 4,840,000원 · 출장여비 : 20,000원*4명*12회 = 960,000원	= 4,840 = 960	

□ 예산요구 사유

- AI 신속 검사를 위하여 공수의사 등 수의사를 동원하여 검사업무 협업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국비 내시에 따라 예산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02. : 동물위생시험소 및 방역본부 협의 후 시료채취 일정 수립
 - 2025.02.~2025.12. : 민간수의사 시료채취 추진 및 비용 지급
 - 2025.12.~2026.02. : 사업 추진 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신규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농업8급 이원택	전화	4313
-----	-----	------------	-----	----------	----	------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무항생제 인증 축산농가
사업규모	30개소		
사업목적	축산농가 무항생제 인증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 도모 및 경쟁력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 제5호, 제6호, 제13호
		시장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축산물의 브랜드(“금빛나루”포함) 육성 및 품질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6.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13. 친환경축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4,700	14,700	10,780	3,920	0	
국비		0			0	
도비	7,200	7,200	5,280	1,920	0	
시비	7,500	7,500	5,500	2,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920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도비 : 경정 (7,200,000원)-기정 (5,280,000원) · 시비 : 경정 (7,500,000원)-기정 (5,500,000원)	= 1,920 2,000	

□ 예산요구 사유

- 친환경 인증 축산농가 확대 및 G마크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무항생제 인증 및 사후관리 비용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량 증가로 인한 예산 증가 : 22개소 → 30개소 (8개소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추진계획 수립
 - 2025.01.~2025.12. : 사업추진(연중 계속)
 - 2025.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무항생제 축산농가 22개소 지원
2024	- 무항생제 축산농가 30개소 지원
2025	-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780	10,511	-	269	
2024	14,700	14,339	-	361	
2025	14,700	-	-	14,700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동물위생팀장 신철우	담당자	행정6급 장경남	전화	4323
-----	-----	------------	-----	----------	----	------

축산물 전문판매업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축산물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사업규모		10개소			
사업목적		안전한 축산물 제공 및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마련하기 위해 자체 위생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용 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 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4,800	8,000	4,800	3,200	3,200	
국비		0			0	
도비	2,400	4,000	2,400	1,600	1,600	
시비	2,400	4,000	2,400	1,600	1,6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200	
축산물 전문판매업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도비 : 경정 (4,000)-기정 (2,400) · 시비 : 경정 (4,000)-기정 (2,400)	= 1,600 1,600	

□ 예산요구 사유

-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골목상권 내 정육점 보호하고자 축산물 위생 관리업체를 통한 구충·구서, 정기소독 등 위생상태 점검 및 개선방향 컨설팅과 축산물위생관리 소모품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량 증가로 인한 예산 증가 : 6개소 → 10개소 (4개소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추진계획 수립
 - 2025.02.~2025.03. :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및 선정
 - 2025.03.~2024.12. : 사업추진
 - 2025.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4개소 지원
2024	- 6개소 지원
2025	-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400	3,200	-	3,200	
2024	4,800	4,800	-	-	
2025	8,000		-	8,000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동물위생팀장 신철우	담당자	행정6급 장경남	전화	4323
-----	-----	------------	-----	----------	----	------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농업진흥과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오리정로 13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글로벌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춰 농촌지도자회원에게 신속한 농업정보를 제공하여 농업·농촌의 경쟁력 향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2조 제4항, 제18조, 제21조
		제2조 4항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 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해당조례	해당없음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27,000	21,000	0	21,000	-6,000	
국비	0	0	0		0	
도비	8,100	6,300	0	6,300	-1,800	
시비	18,900	14,700	0	14,700	-4,200	
기타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1,000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201-01 사무관리비	· 농업정보지 제공 : 15,000원*350명*4회 =	21,000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국·도비 매칭된 사업이나, 2025년 본예산 편성 누락으로 인한 추경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농업정보지 배부대상(450명→350명) 농촌지도자 회원 수 감소로 인한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기본계획 수립
 - 2025.01. ~ 2025.12. : 농촌지도자회원 정보지 제공
 - 2025.12. :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농업정보지 제공 350명
2024	• 농업정보지 제공 450명
2025	• 농업정보지 제공 350명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1,000	21,000	-	0	
2024	27,000	27,000	-	0	
2025	-	-	-	-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지도기획팀장 김경호	담당자	농촌지도사 전찬영	전화	4332
-----	-------	------------	-----	-----------	----	------

생활개선회 재능활용 지역돌봄사업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위치	월곶면 오리정로 13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농촌 여성이 함양하고 있는 재능을 지역사회에 기부함으로써 농촌 지역사회 활력화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2조 제4항, 제21조
		제2조 4항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 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9조
	해당조례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김포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제5조
		① 개발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실습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10,000	0	10,000	10,000	
국비		0			0	
도비		3,000		3,000	3,000	
시비		7,000		7,000	7,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	
생활개선회 재능활용 지역돌봄사업	201-03 행사운영비	· 교육 운영 물품 구입 : 1,100,000원 · 생활개선회 재능활용 지역돌봄사업 교육 운영비 : 500,000원*16회 = 8,000,000원	= 1,100 = 8,00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생활개선회 재능활용 지역돌봄사업 급식비 : 9,000원*100명	= 900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국·도비 매칭된 사업이나, 2025년 본예산 편성 누락으로 인한 추경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추진계획 수립
 - 2025. 02. ~ 11. : 사업 추진
 - 2025. 12. :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 없음
2024	해당 없음
2025	해당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지도기획팀장 김경호	담당자	농촌지도사 박소현	전화	4334
-----	-------	------------	-----	-----------	----	------

농산물가공제품 온라인 포장재 개발 시범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최근 소비동향에 따른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한 농업인 가공제품 포장재 개발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 경쟁력 강화 온라인 판매용 및 친환경 포장재 개발을 통한 농업인 가공제품 상품성 향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농촌진흥법		제16조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8,000	0	8,000	8,000	
국비		0			0	
도비		3,000		3,000	3,000	
시비		5,000		5,000	5,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000	
농산물 가공제품 온라인 포장재 개발 시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온라인 판매용 포장재 및 친환경 포장재 개발 등 : 8,000,000원*1개소	= 8,000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국·도비 매칭된 사업이나, 2025년 본예산 편성 누락으로 인한 추경 편성
- 최근 소비동향에 부합하는 포장재(용기) 및 디자인 개발 필요
- 사업내용 : 농산물 가공제품 온라인 판매용 포장재(용기) 및 친환경 포장재 개발(개발 후 시제품 제작 필수)
제품특성에 맞는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발 전문가 컨설팅. 개발된 시험용 포장재 제작 등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2. :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대상자 모집
 - 2025. 2. ~ 3. : 현지조사 및 심의 상정
 - 2025. 3.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전교육
 - 2025. 4. ~ 11. : 사업 추진
 - 2025. 12. : 사업 결과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6,000	16,000	-	-	
2024	-	-	-	-	
2025	-	-	-	-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농촌관광팀장 김지수	담당자	농촌지도사 우민식	전화	4337
-----	-------	------------	-----	-----------	----	------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통진읍 하성로 58-155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농업기계 임대를 통한 농작업 기계화율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2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227,712	333,611	273,611	60,000	105,899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27,712	333,611	273,611	60,000	105,899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0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임대용 농기계 구입 : 30,000원*2개 =	60,000	

□ 예산요구 사유

- 사용기간이 짧고 임대요구도가 높은 농기계인 이앙기 부족으로 인한 불편 민원 발생
- 임대장비 보유량 확대를 통한 임대수요 적기 해소 및 생산성 향상 기대
- 기존 장비와의 병행 사용으로 기계장비의 부담률 해소 및 사용기한 연장

□ 예산증감 사유

- 농번기 임대수요가 많은 농기계(이앙기) 추가 구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농업기계 구입 계획 수립
 - 2025.03. : 농업기계 구입 및 보험가입
 - 2025.04 ~ 2025.05. : 임대장비 등록 및 단기임대 활용
 - 2025.12. : 구입 결과 등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농기계 임대 : 3,794대(임대금액 : 68,349천원) · 농기계 안전교육 : 13회(305명), 임대농기계 상시교육(농기계 임대시) · 농기계 19종 30대 구입(발작물기계 및 기자재) · 임대농기계 배달서비스 운영(97건) * 코로나19 대응 농업인 피해 최소화 농기계 임대료 인하 운영 : 2023 01 01~ 12. 31
2024	· 농기계 임대 : 3,974대(임대금액 : 74,727천원) · 농기계 안전교육 : 15회(345명), 임대농기계 상시교육(농기계 임대시) · 농기계(농용굴착기,제초기)/농기자재(안전난간대) 구입 · 임대농기계 배달서비스 운영(116건) · 시범사업 : 1건(IoT 농업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람 기술 시범) * 코로나19 대응 농업인 피해 최소화 농기계 임대료 인하 운영 : 2024 01 01~ 12. 31
2025	* 2025.01.10. 기준 추진실적 · 농기계 임대 : 6대(임대금액 : 157천원) · 임대농기계 배달서비스 운영(1건) * 코로나19 대응 농업인 피해 최소화 농기계 임대료 인하 운영 : 2025 01 01~ 12. 31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13,440	356,687		56,753	
2024	227,712	222,229		5,483	
2025	273,611	-		-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농기계팀장 김종무	담당자	전문경력관 다군 정윤환 공업7급 이선용	전화	4348 4335
-----	-------	-----------	-----	--------------------------	----	--------------